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017호 2016년 10월 17일(월)

조 례

-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·상속에 관한 조례 2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
· 상속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10월 17 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 2502 호

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·상속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·상속)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·상속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 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제정이유

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·상속을 금지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 및 제15조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양도·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, '09.11.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·양수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